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(2공구)]

□ 점검일시 : 2020.01.15 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이태행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카고크레인은 전방(운전석 방향) 작업범위에 있을 경우 정격 총 하중이 줄어들어 전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, 전방작업 범위에서의 작업을 지양하도록 작업계획을 작업하여 관리 요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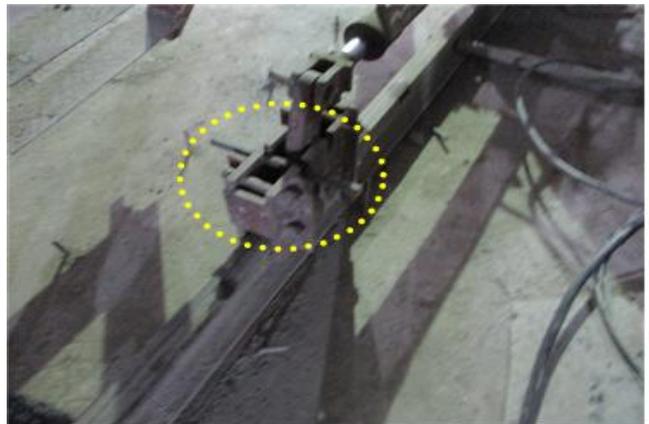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차량기지 덕트 골조 작업구간에 설치된 비계는 수직승강로가 없어, 해체/설치 작업시 불안정한행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수직승강로를 설치 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라이닝 거푸집 고정시 사용되는 고정핀은 현재 철근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, 규격품을 사용 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작업대차 1단에 설치된 이동통로는 끝단이 미고정이 되어 기울어 있으므로, 견고하게 보완 설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가설비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관제소 외부 골조 작업시 설치된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 승강로는 외부에 고정되어 있어 수직 이동시 불안정한행동을 유발하므로, 조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의 구조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관제소에 생성된 드라이에어리어 구간과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골조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용 비계는 수직승강로 및 수평이동통로가 미설치되어 있어 이동시 불안정한행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보완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지적사항없음(도시철도사업부)

- 일일안전일지는 양호하게 관리중임

